

일본의 돈육가공품(축산물) 수입기준

1. 품목 분류(HS코드)

- HS코드 16類 : 소시지 등 조제품

2. 수입 규제

□ 차액관세제도

- 수입 돈육의 가격이 낮을 경우, 기준 수입 가격보다 낮은 부분을 관세로 징수해 국내 돈육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,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저율의 종가세를 적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
 - [과세 가격이 1kg 당 분기점 가격 이하인 경우] (1kg 당 수입가격*1.5)-(과세가격*0.6) 징수
 - [과세 가격이 1kg 당 분기점 가격 초과하는 경우] 돈육가공품 8.5% 종가세 부과
- 돼지고기 및 소시지 등의 가공품으로, 돼지고기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에 적용 (베이컨류, 햄류, 프레스 햄(press ham), 냉동 햄버거 스테이크 등)
- 1971년 무역자유화가 실시되었을 때, 국내 가격보다 싼 제품이 수입되어 공급 과잉이 되거나, 반대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는 돼지고기 등 돈육제품에만 적용

□ 가축 전염병 예방법

- 일본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 지역에서 수입되는 우제류(偶蹄類) 동물의 고기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
- 그러나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일정한 가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 가능

□ 수입금지 지역 및 물건 (일본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43조)

- 감시전염병 중, 병의 성질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한 악성 가축 전염병(현재는 우역(牛疫),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콜레라)에 대해 발생 상황과 발생 지역의 방역 조치 등을 기준으로 지역을 3가지로 구분하여 수입금지 물품을 정함

- 한국의 경우, 아래 중 **2지역에 해당**하므로 우제류 동물 및 수정란 등의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, 돈육가공품(햄·소시지 등) 및 우제류 동물의 육제품은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처리시설에서 가열 처리하고 국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가능

<수입국 지역구분>

구 분	지 역	우제류 동물	수정란· 정액	햄·소시지 ·베이컨	우제류 동물의 고기·장기	벚꽃 등
0	상당 기간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의 발생이 없고 방역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며, 악성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여겨지는 지역(총 39지역) [유럽 지역] 핀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 등 [미주 지역] 브라질(산타·카타리나주에 한함), 캐나다, 미국(미국 대륙, 하와이, 괌에 한함) 등 [오세아니아 지역] 북마리아나 제도, 뉴질랜드 등	수입가능 (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 필요) ※ 주의 표에서 “수입가능”이라고 되어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입 불가능 · BSE(광우병) 발생국의 소, 양, 염소 육제품 · 조류독감 발생국(지역)의 가금류 육제품 · 돼지콜레라 발생국(지역)의 돼지 육제품 · CWD(만성소모성질환) 발생국의 사슴 제품 등				검역 불필요
1	방역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현재 구제역의 발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= 싱가포르, 루마니아, 슬로베니아 등	수입가능 (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 필요)			수입금지 ¹ (단, 가열처리 기준에 따라 가열처리된 것은 수입가능)	수입금지 ² (단, 가열처리 기준에 따라 가열처리된 것은 수입가능)
2	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의 발생이 있거나, 방역체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역 = 상기 이외의 지역	수입금지		수입금지 ² (단, 가열처리 기준에 따라 가열처리된 것은 수입가능)		수입금지 ² (단, 가열처리 기준에 따라 가열처리된 것은 수입가능)

(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43조의 표 - 갱신일 : `14.2.19)

수입금지¹ : 농림수산성 장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처리시설에서 일정한 가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,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가 있는 것에 한해 수입 가능

수입금지² :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처리시설에서 일정한 가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,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가 있는 것에 한해 수입 가능

3. 돈육가공품 열처리시설 지정 절차(한국)

□ 지정 절차

- 일본 농림수산업 장관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,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적합성 판단을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며, 해당 시설이 2년간 돈육 가열처리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, 승인(지정)함
- 지정 후에도, 한국가축위생당국은 최소 반년마다 지정 가열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지정 기준 및 기타 가축 위생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

□ 지정 기준(요약)

- 지정된 시설은 사전열처리 지역(원료 전용 처리 및 검사 시설 등 구비)과 사후열처리 지역(가열처리 가공 품목 전용 처리 시설 등 구비)을 갖춰야 함
- 사전열처리 지역은 개폐 가능한 가열처리 시설의 원료 반출입구 및 사전열처리 지역의 공기가 사후열처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된 원료 반출입구 이외 사후열처리 시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함

※ 전문 : 일본 동물 검역소 가열처리 돼지고기 등의 가축위생조건(21動檢1089호-`10.2.18) 참고

□ 국내 일본 승인 지정 돈육가공품 열처리시설 (`14.1.30일 기준)

번 호	업체명	공장 위치	품 목	
			고기(肉)	햄·소시지·베이컨
J01511001	(주)다인제주	제주 애월읍	○	○
M01510004	(주)장충동 왕족발	충북 청원군	○	○
M01511004	이유포드(주)	인천 중구	○	○

※ 타 국가 승인 시설 보유 수

- 중국(111개), 태국(25개), 대만(5개), 브라질(6개), 아르헨티나(5개), 우루과이(5개)

※ 현재 우제류 동물의 장기(臟器)에 관한 가열처리 시설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수입 불가

※ 출처(2~3번) : 일본 동물검역소(動物檢疫所)

4. 일본 주요 돈육가공품 수입실적

(단위 : 톤, 천\$, %)

품 목 [HS코드]	국 가	2012		2013		증감률	
	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돼지고기(넓적다리살/ 이것을 분할한 것) [1602.41]	합 계	5,246	34,870	5,876	34,220	12.0	△1.9
	중 국	2,941	18,307	2,034	15,414	△30.8	△15.8
	태 국	1,504	11,378	1,028	7,948	△31.7	△30.2
	미 국	253	1,530	2,338	7,672	822.6	401.5
	한 국	32	201	12	55	△62.2	△72.4
	기 타	516	3,454	464	3,131	△10.1	△9.4
돼지고기(어깨살/ 이것을 분할한 것) [1602.42]	합 계	122,967	387,628	138,249	408,971	12.4	5.5
	미 국	93,654	289,619	104,883	306,616	12.0	5.9
	캐나다	15,129	48,580	18,012	50,583	19.1	4.1
	멕시코	4,789	15,825	3,937	14,460	△17.8	△8.6
	한 국	49	267	23	112	△53.4	△58.0
	기 타	9,346	33,337	11,394	37,200	21.9	11.6
돼지고기(기타/ 혼합물 포함) [1602.49]	합 계	59,196	343,686	55,089	290,026	△6.9	△15.6
	미 국	22,308	100,504	21,474	104,751	△3.7	4.2
	중 국	24,697	153,054	19,668	94,618	△20.4	△38.2
	태 국	6,279	54,152	6,924	55,754	10.3	3.0
	한 국	95	292	91	327	△4.6	12.2
	기 타	5,817	35,684	6,932	34,576	19.2	△3.1

※ 출처 : Global Trade Atlas 수출입통계

6. 한국 대일본 주요 돈육가공품 수출실적

(단위 : kg, \$, %)

품 목	HS코드	2013.5		2014.5		증감률	
	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돼지고기(넓적다리, 어깨살,그절단육이외 기타/혼합물포함/조제/ 밀폐용기에 넣은 것)	1602.49.1000	30,657	137,247	19,102	87,251	△37.7	△35.0
돼지고기(기타/혼합물 포함/조제/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)	1602.49.9000	17,174	51,070	14,317	43,103	△16.6	△15.6
돼지고기(넓적다리살, 그절단육/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)	1602.41.9000	-	-	2,351	20,775	-	-
합 계		47,831	188,317	35,770	151,129		

※ 출처 : KATI 수출입통계